

6. 법인세법중 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재정경제원공고 제1998-10호 1998. 1. 15.

주요 골자

- 가.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이자소득의 범위를 10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축소하여 국제기준에 일치시키고 법인간 과세형평을 제고시키도록 함.
- 나. 선박 등의 특별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특별수선충당금 제도를 폐지하여 국제기준에 일치시킴.
- 다. 감정평가법인 및 회계법인이 손해배상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충당금 및 준비금제도를 1998년 1월 1일부터 폐지하여 국제기준에 일치시킴.

개정 취지

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와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비금 및 충당금 손비 인정제도를 축소·폐지하려는 것임.

주택회보